

14. 건설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

건설교통부고시제1999-363호 1999. 12. 6

1.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

위탁할 업무의 내용	수탁기관		
	기관명	대표자	소재지
가.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	한국건설 기술인협회	황상모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8-5
나.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·관리	"	"	"
다.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	"	"	"
라.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	"	"	"
마.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 합관리	"	"	"
바.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이에 고용된 감 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한국건설 감리협회	황해근	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-6
사.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 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(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)	"	"	"
아.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 원증의 교부 및 관리	"	"	"

위탁할 업무의 내용	수탁기관		
	기관명	대표자	소재지
자. 영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,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·관리, 감리용역수행현황·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	한국건설 감리협회	황해근	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1-6
차. 가목 내지 라목(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)에 관한 업무	대한건축사 협회	이의구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-55
카.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대한건설 협회	장영수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-2 건설회관
타.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대한주택 건설사업 협회	박길훈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3 주택회관 4층
파.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(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)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	남정현	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4-14
하.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(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)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한국기술 사회	김명년	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-4 한국과학기술회관
거.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(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)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	대한측량 협회	최재화	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-2 영등포 유통센터

위탁할 업무의 내용	수탁기관		
	기관명	대표자	소재지
너.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정보체제의 구축·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더.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 러.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머.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위한 전문·기술적인 심사 버.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서. 영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어.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	한국건설 기술 연구원	하진규	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
저. 더목(건설관련업체·단체와의 협이·조정, 민간부문의 연구개발·표준화·공동사업의 시행등에 한한다)에 관한 업무	한국건설 CALS 협회	김윤규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-2 건설회관

2. 위임업무수행기관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

가.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,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제4항의 규정

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- (1) 영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
- (2) 영 제60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: 한국건설감리협회

나. 건설교통부장관,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- (1) 건설기술자의 경우 : 한국건설기술인협회
- (2)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: 한국건설감리협회
- (3) 설계등 용역업자
 -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: 한국기술사회
 -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의 경우 : 대한측량협회
 -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및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외의 자의 경우 :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
- (4) 건설업자의 경우 : 대한건설협회
- (5)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(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) : 대한주택 건설사업협회

3. 시행일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